

의안번호	제3121호
의결연월일	2026. . . (제 회)

의 결 사 항	
------------------	--

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6. 7. 13.

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312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6. 7. 13.

제안자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, 「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구성인원: 10명
- 위원선임: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존속기간: 위원선임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
- 처리안건: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

3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, 제65조
- 「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, 제8조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□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, 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(기금운용변경계획안)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<삭제 2022. 1. 13 조 2709>

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⑦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, 최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